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융자범위)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이자율 등)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융자범위)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시설자금 :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 설치비의 70% 이내 2. 공급시설자금 :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 	<p>제6조(융자범위)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삭제> 2. <삭제>
<p>제7조(이자율 등)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시설자금 : 연리8% (3년 균등분할상환) 2. 공급시설자금 : 연리8% (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) 	<p>제7조(이자율 등)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삭제> 2. <삭제>
부 칙	
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.</p>	